

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2. 27, 경기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06. 2. 27

다. 상정일자 : 2006. 3. 10

- 제20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정
- 제안설명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 개정이유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규정되어 있는 자연재난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이 2004. 3. 11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상위 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,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기준안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조례명을 신법에 맞게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에서 경기도 특별재난 지역 지원 조례로 변경(안 제명)
- 적용법령 및 조항, 문구 등을 신법에 맞게 수정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)
- 조례에 적용하는 재난의 범위(태풍, 홍수, 호우, 폭풍, 해일, 폭설, 가뭄, 지진)에 황사와 적조를 추가(안 제2조).
-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지원은 지역본부장이 재난 발생시점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신설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가. 조례제정의 법적근거·타당성 등

- 본 조례안은 96년도에 경기북부지역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당시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조례임.
 - 당시 관련 법률에는 특별재난지역 등의 선포 등의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수해로 인하여 북부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 조례를 제정하였음.
 - 2004. 3. 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,

-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기준안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, 적법성이나 타당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나. 조례안의 내용 등

- 제명을 현행법에 맞게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조례로 변경하였고
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적용하는 재난의 범위에 황사와 적조를 추가하였음.
- 제6조를 신설한 것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‘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 제3조에 의거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재난발생 시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장이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도와 시·군이 일률적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토록하고 소액인 경우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경기도재해극심지원조례”를 “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자연재해”를 “자연재난”으로 하고, “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”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4조”로 하며, “경기도재해대책본부장”를 “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”으로 하고, “재해응급대책·재해복구”를 “대응·복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”를 “가뭄·지진·황사 및 적조 등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재해응급대책”을 “재난응급대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방재계획”을 “안전관리계획”으로 하며, “재해응급대책”을 “재난응급대책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및 제49조”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9조 및 제44조”로 하고, “재해지역의 재해응급대책”을 “재난지역의 응급대책”으로 하며, “재해지역”을 “재난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재해지역”을 “재난지역”으로 하며, “공무원이”를 “공무원의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재해극심지역의 선포 및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”을 “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극심지역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”으로 하고, “재해를”을 “재난을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재해극심지역”을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4항 중 “재해발생”을 “재난발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의 “재해복구사항”을 “재난복구사항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기준)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에 적용되지 않는 재난에 대한 도비지원은 본부장이 재난발생시점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